산업통상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10.28.(화) 06:00 < 10.28.(화) 석간 > 배포 2025. 10. 27.(월)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공청회 (10.28.(화)) 개최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유통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으로, 곡류, 채소, 우유, 과자류, 도료, 윤활유, 조리식품 등 27종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정량표시상품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생활용품, 세제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상품의 실량을 표시량보다 평균적으로 작게 포함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21.7%)하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❶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❷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❸조사 샘플수 확대 등 관리 방식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정부 관계자, 계량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책임자	과 장	홍순파 (043-870-5510)
		담당자	연구관	김소미 (043-870-5512)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계량법」 개정안 2차 공청회 개요

□ 개회 목적

○ 정량표시상품*의 법적 관리체계 전환**(사전인증 → 사후관리)에 발맞춘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하고 소비자·산·학·연 의견수렴

*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 27종 품목을 지정하여 질량, 부피, 개수, 길이, 면적 등의 수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관리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K-마크) 폐지('24.1.)

□ 개정(안) 주요내용

○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조사 샘플 수 확대 등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25.10.28.(화), 10:00~/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참석자) : 정량표시상품 사업자,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60명 내외

○ (주요 내용) :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계량법 개정(안) 내용 공유 및 전문가 패널 토의

○ (진행 순서)

시간	주요 내용	발제자 및 패널			
		소속	이름	직책	비고
10:00~10:10	축사/ 인사말씀	김원이 의원/ 적합성정책국장			
10:10~10:40	계량법 개정(안) 설명	국가기술표준원	홍순파	과장	발제
10:40~11:40	패널 토의 - 법령 개정(안) 주요 이슈 논의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좌장
		표준과학연구원	정진완	전문연구원	패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	〃
		서울우유협동조합	김준형	실 장	〃
11:40~11:50	질의 및 응답	국가기술표준원	김소미	연구관	사회자

□ 향후 계획

○ 계량법 개정안 확정 및 개정추진('25.11.~)

참고 2 「계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발제자료 요약)

1 제도운영 현황

■ **(개념)** '정량표시상품 (Prepackaged products with fixed quantity labeling)'이란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가 1991년에 「계량법」에 도입

* 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❶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하며, ❷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 대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현재 곡류, 과자류, 우유류 등 27종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관리

* 정량표시상품 국내시장 규모 ('24년, 추정) : 약 400조원

■ **(제도운영)** 그동안 (사전)'**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사후)'**시판품조사**'를 통해 관리해 왔으나, 규제개선 일환으로 '자기적합성선언'이 폐지('24년 폐지)됨에 따라 **사후관리 제도로 전환**

● **(자기적합성선언)** 상품사업자가 적합성확인기관(계량측정협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동 상품이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제도** ('06년 도입, '24년 폐지)

● **(시판품 조사) '표시사항' 및 '개별 허용오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시판품 조사 실시

* (시판품 조사 예산/조사품목수: '24년 기준) 1.49억원 / 1,030개 품목

■ **(평가)** 시판품조사 결과, **허용오차 위반 상품이 1.1% 수준**으로 **외견상 제도 운영은 성공적이나**

● "평균적으로 실량<표시량" 등 **제도의 허점 악용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정량표시상품 관리의 전반적 제도평가 및 개선안 마련 필요**

2 시판품 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

■ **(시판품 조사방법)** 슈링크플레이션 취약 품목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을 **매년 약 500~1,000여개를** 구매하여,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표시된 양(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실량)과의 **허용오차**를 검사

* 우유, 라면, 커피, 밀가루, 설탕, 식용유, 화장지, 세척용품 및 위생용품 등 집중관리 7대 품목 및 슈링크플레이션 취약 상품

● **(절차)** 샘플 구매(협회) → 검사(KTC) → 검사결과 취합(국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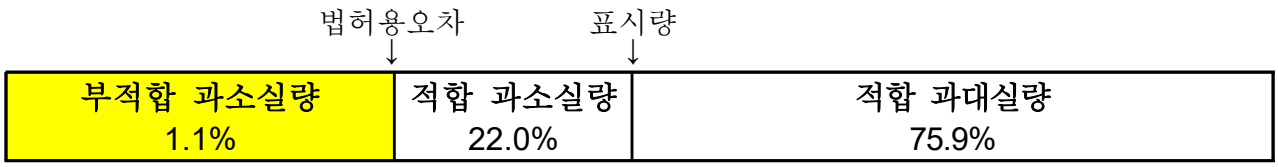
● **(허용오차 검사방법)** 상품당 3개 샘플 구매·검사 → 3개 중 1개라도 허용오차 초과 시, 동일 상품 3개를 추가 구매·재검사 → 재검사 결과 1개 이상이 허용오차 초과 시, 허용오차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

* (허용오차 예시) 질량표시 상품 : (~50g) 9%, (100g~200g) 4.5%, … , (15kg~50kg) 1%

■ **(전체 데이터)** 10년간 6,985개 상품, 20,955개(=6,985×3) 샘플 조사

● 법 허용오차를 넘어서는 **부적합 과소실량** 비중은 **1.1%로 매우 낮아서,** 사업자들이 **현행 규제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됨

< 샘플의 분포도 (density) >



● 반면, 3개 샘플의 평균실량이 표시량보다 작은 **과소 평균실량 상품은 21.7%**로, **전체 상품 중 21.7%는 평균적으로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작음**

< 상품의 평균실량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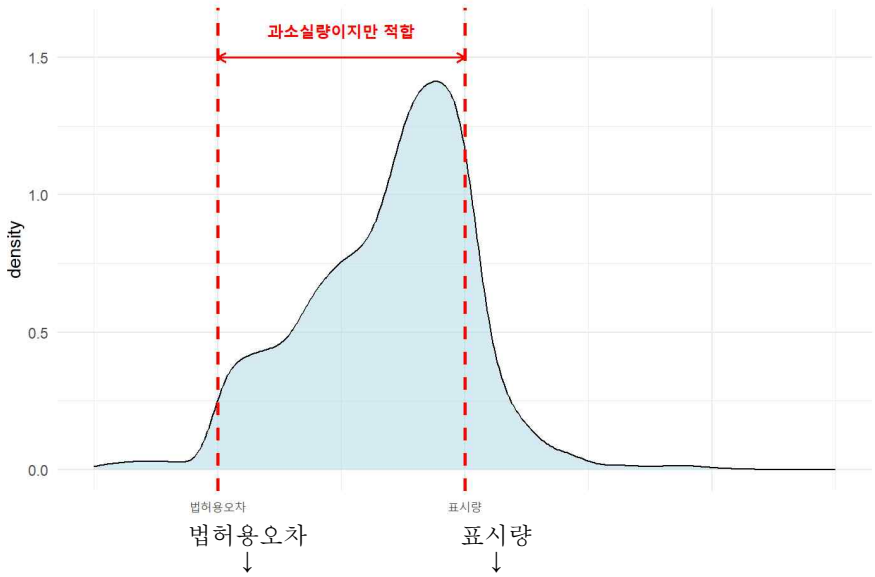
그 룹	평균실량<표시량 (과소 평균실량)	평균실량=표시량	평균실량>표시량	합계
비율	21.7 %	4.0 %	74.3 %	100.0 %

2 시판품 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 (계속)

■ **(과소 평균실량 상품)** 과소 평균실량 상품만을 별도로 분석하면 79.8%가 적합 과소실량

☞ 허용오차 범위에서 표시량보다 작게 실량을 채움으로써 **허용오차 제도를 적극 활용** 시사

< 과소 평균실량 상품의 샘플분포도 (density) >



부적합 과소실량	적합 과소실량	적합 과대실량
5.1%	79.8%	15.1%

● 특히 **액화석유가스, 우유, 도료** 등의 상품군에서 과소 평균실량 상품 비중이 큼

< 과소 평균실량 비중이 30%가 넘는 상품군 >

상품군	액화석유가스	우유	도료	꿀
(상품군내) **비율 (%)**	47.6	42.2	35.1	34.3

3 정량표시상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평균량 개념 도입

● 개별 허용오차만을 규제하다 보니, 사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모든 내용물에 개별 허용오차만큼 적게 채워** 이윤 극대화할 유인 발생

* (예시) 300mL 우유의 경우 (개당 9mL 오차 허용), 이론적으로 100개 당 3개 추가 생산 가능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평균량 개념* 도입 권고, 외국도 '평균량'을 규제**

* OIML R 87(권고) 상 평균량 요건: 포장 상품의 평균 실제량은 적어도 표시량과 동일해야 함

** 한국의 경우, 부적합률이 **개별 허용오차 기준시 1.1%, 평균량 개념 추가시 21.7%**

☞ **(개선방향) 평균량 개념 도입** (정량표시상품의 적합성검사 기준에 '개별 허용오차' 외에 **평균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지 여부도 포함**)

2 대상 상품 범위 확대

● **적용 대상을 27종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서로 중복적이며 최근 **소비자 관심도가 커지는 상품**(예: 반려동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누락**

☞ **(개선방향)** 대상 상품을 「**27종 →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을 표시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 다만, 타법에서 관리 중인 상품(예: 의약품)은 제외

3 시판품 조사의 실효성 제고

● **(시판품조사 미흡)** 수많은 정량표시상품이 유통 중이나, **예산 부족**('24년, 1.45억원)으로 조사는 **연간 1천여개*에 불과**하여 실효성있는 조사·분석 어려움

* 해외 사례: (중국; '23) 28,000여개, (독일) 약 6만여개, (일본; '24) 약 16만여개

● **(전담기관 미비)** 소비자권리, 공정거래 측면의 중요성에도 불구, 정량표시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관 미비**로 체계적 업무추진에 한계

☞ **(개선방향) 조사 확대** (상품수 1천개 → 1만개 이상), **계량협회** 전담기관 지정